#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459 발의연월일: 2021. 9. 7.

발 의 자:김성원·김도읍·김승수

김용판 · 김정재 · 박대수

박덕흠 • 서일준 • 이채익

정운천 · 최춘식 · 최형두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 대하여 성능인증제를 시행하도록 하면서 성능인증의 유효기간 및 성능인증 이후 별도의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성능인증 이후 미세먼지 간이측 정기의 구조와 성능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음.

특히,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경우 기기적 오류로 미세먼지 농도가 잘못 측정되어 제공된다면 이를 이용하는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기기에 대한 공장심사와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공장심사와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5년 이하로 정하고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경우 1년 이내 기간마다 사후관리를 받도록 하여 미세 먼지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생산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 제2 5조 및 제31조).

#### 법률 제 호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5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유효기간 및 공장심사의 시기는 최초 성능인증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중 대중에 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를 따라야 하며, 성능점검을 시행하고 측정 결과를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
- 1. 제24조제5항의 성능점검 유효기간은 1년 이내 기간으로 하며, 세부기준·주기·방법 및 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4조제1항에"를 "제24조제1항 및 제24조제4항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제24조제5항에"를 "제24조제6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제24조제5항에"를 "제24조제6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성능인증 유효기간이 초과한 경우
- ④ 환경부장관 또는 성능인증기관은 제24조제5항에 따라 성능점검을 받아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사용하여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용을 정지하거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보완 기간을 정하여 재점검할 것을 명할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점검을 받은 경우
- 2. 성능점검의 결과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 3. 연속하여 3회 이상 성능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 제31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제25조제4항에 따라 사용정지 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대중에 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한 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유효기간 및 성능점검에 관한 적

- 용례) ① 제2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도 적용된다.
- ② 제2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도 적용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 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성능점검 없이 사용 중인 경우에는 환경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성능점검을 받아야 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	제24조(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
능인증 등) ① ~ ③ (생 략)	능인증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④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유효기간 및 공장심
	사의 시기는 최초 성능인증일
	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사	⑤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용하는 자가 그 측정 결과를	받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중
일반에 공개하는 경우에는 환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
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따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
<u>라야 한다.</u>	도로 사용하는 자는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를 따라야 하며,
	성능점검을 시행하고 측정 결
	과를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
<u> &lt;신 설&gt;</u>	1. 제24조제5항의 성능점검 유
	효기간은 1년 이내 기간으로
	<u>하며,</u> 세부기준·주기·방법
	및 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른다.
<u>⑤</u> (생 략)	<u>⑥</u> (현행 제5항과 같음)
제25조(성능인증의 취소 등) ①	제25조(성능인증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성능인증기관 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성능인 증을 받은 미세먼지 간이측정 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성능 인증을 취소하거나 성능인증표 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 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성 능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 3. (생 략) <신 설>

- 4. <u>제24조제5항에</u> 따른 사항에 맞지 아니한 경우
- ② (생략)
- ③ 환경부장관은 성능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한다.
- 1. 2. (생략)
- 3. <u>제24조제5항에</u> 따른 성능인

<u>제24</u> 조제1항 및 제24조제4항
<u>에</u>
1. ~ 3. (현행과 같음)
4. 성능인증 유효기간이 초과한
<u>경우</u>
<u>5.</u> 제24조제6항에
② (현행과 같음)
③
1. • 2. (현행과 같음)
3. <u>제24조제6항에</u>

증기관의 지정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신 설>

④ (생략)

제31조(과태료)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 (생략)

<신 설>

\_\_\_\_\_

\_\_\_\_\_

④ 환경부장관 또는 성능인증 기관은 제24조제5항에 따라 성 능점검을 받아 미세먼지 간이 측정기를 사용하여야 하는 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용을 정지 하거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보완 기간을 정 하여 재점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 에는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성능점검을 받은 경우 2. 성능점검의 결과가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아 니한 경우

- 3. 연속하여 3회 이상 성능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
-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3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 (2) -----
- \_\_\_\_\_
- -----.
- 1. 2. (현행과 같음)
- 3. 제25조제4항에 따라 사용정

	지 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
	도로 사용한 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